

담배자동판매기 設置禁止(제한)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

의안 번호	225
----------	-----

提出年月日：1993年 2月 日

提出者：文教社會 委員長

1. 主 文

靑少年들의 有害環境으로 대두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禁止(제한)에 관한 事項은 中央政府 차원의 法律로 立法化되도록 건의함.

2. 提 案 理 由

- 現行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制限에 대하여는 法律의 委任限界性으로 实效性있는 條例制定이 곤란하므로
- 보다 더 根本的인 對策 講究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의 調整을 中央政府 차원에서 檢討하도록 國會와 關係部處에 建議하고자 함.

※ 첨 부：建議案 1 부 끝.

담배자동판매기 設置禁止(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

최근 靑少年들을 吸煙環境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를 禁止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범 社會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高度 成長 爲主의 産業化 政策으로 刮目할만한 經濟成長은 이루어졌지만 이 過程에서 과생된 복잡하고 다양한 社會構造는 靑少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수 있는 有害 環境들을 우후죽순처럼 불러

일으켜, 靑少年들의 脫線行爲를 조장하는등 많은 不作用을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有害 環境중에서도 靑少年들의 吸煙에 대한 문제는 가장 深刻하여 靑少年들을 吸煙의 環境으로부터 保護하여야 된다는 지적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當 議會에서도 최근 市民團體들로부터 靑少年들의 吸煙動機를 誘發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를 禁止하는 請願을 접하고 이에 대한 內容을 심도있게 檢討한바 있습니다.

그 結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는 上位法의 委任限界등으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規定하기에는 많은 問題點에 봉착하게되어 本 建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保護法과 담배사업법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나라 靑소년들을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制定된 미성년자

保護法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깍을 것을 알고 연초를 販賣하지 못하도록 營業者의 義務規定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년 以下

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 規定(第6條)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事業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 基準은 담배자동판매기가 구매자에 대한 識別이나 認知能力이 전혀 없음에도

일반 小賣人과 同一한 基準으로 設置할 수 있도록한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保護法의 立法趣旨와는 무관하게 設置된 담배자동판매기는 靑少年들의 吸煙心理를 충분히 충족시켜 靑少年들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없이 흡연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로 靑少年을 吸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미성년자保護法의 立法趣旨에 입각하여 재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地方自治團體 條例制定의 限界性입니다.

政府에서는 靑少年들을 吸煙環境으로부터 保護해야 된다는 社會輿論을

인식하여 지난 92년 7월 24일 財務部令 第 1890號로 담배 사업법 施行規則 第11條를 改正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를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로 정할수 있는 위임한계는 靑少年의 保護를 위하여 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장소에 한하여 自動판매기의

設置를 制限할수 밖에 없고 또한 이를 위반하여도 어떤 罰則規定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地方自治團體 條例制定의 限界性 때문에 地方自治團體가 法律의 委任範圍안에서 담배자동판매기 設置를 制限하는 條例를 制定한다.

하더라도 現 靑少年들의 담배購入實態상 學校周邊보다는 市內中心地域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实效性이 없는 條例가 될 것은 자명하며 결국 양담배 消費만 상대적으로 부추기는 結果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事項들을 綜合 考慮하여 볼때 靑少年들을 吸煙環境으로 부터 保護하여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設置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미성년자 保護法의 立法趣旨를 충분히 反映하여 調整되어야 하는등 中央政府 차원에서 법률이

재정비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本 建議를 드리오니 이 나라의 將來를 이끌어갈 靑少年 保護의 重要性을 인식하시어 配慮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993. 2.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一同

受信處：國會議長